

『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』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2년 8월 14일

인천광역시의회 의장

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국·공립대학부속병원만을 업무용으로 구분한 제12조(공공하수도 사용료)제2항의 [별표1]의 제2호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비영리 학교법인인 사립대학부속병원도 업무용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
- 나. 국·공립대학부속병원과의 형평성 문제 및 타 지자체(특별시/광역시)와의 상이한 업종구분에서 오는 민원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사립대학부속병원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우리시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한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기여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(공공하수도 사용료)제2항의 [별표1]의 제2호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에 따라 현재 사

립대학부속병원은 비영리 학교법인임에도 불구하고 “병원”으로 분류되어 영업용 하수도 요금을 부과 받고 있음.

- 나. [별표1]의 제2호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 중 업무용에 해당하는 “국·공립대학부속병원(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)”을 “국·공립대학부속병원(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) 및 사립대학부속병원”으로 수정하고, 영업용에 해당하는 “병원”을 “병원(국·공립대학부속병원 및 사립대학부속병원 제외)”으로 수정함으로써 사립대학부속병원도 국·공립대학부속병원과 같이 업무용으로 하수도 요금을 부과토록 함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(월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참조 :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35, 팩스 032-440-876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- 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: ○ 성 명: ○ 연락처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1]의 제2호의 업무용의 구분내용란 중 “국·공립대학부속병원(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)”을 “국·공립대학부속병원(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) 및 사립대학부속병원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영업용의 구분내용란 중 “병원”을 “병원(국·공립대학부속병원 및 사립대학부속병원 제외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

관계 법령	☐ 하수도법 ○ 제65조(사용료 등) ○ 제15조(사용의 공고 등) ☐ 하수도법 시행규칙 ○ 제9조(관리의 범위)제1항제2호 ☐ 지방자치법 ○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○ 제22조(조례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조례 정비대상	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
관련자료	

관련 법령 발췌 사항

☐ 하수도법

제65조(사용료 등)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.

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, 부과단가, 재원부족액,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(사용의 공고 등)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, 배수구역(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하수관거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,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.

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,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☐ 하수도법 시행규칙

제9조(관리의 범위) ①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 : 특별시장, 광역시장
2.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거나 그 밖의 공작물 :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

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른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, 비용의 배분에 관하여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

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

가. 지역개발사업

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
다. 도시계획사업의 시행

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군도의 신설·개수(改修) 및 유지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바.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
사. 자연보호활동

아. 지방1급하천,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
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
차.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카. 도립공원·군립공원 및 도시공원, 녹지 등 관광·휴양시설의 설치
및 관리

타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
파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하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
거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
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
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 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[별표1]의2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의 업종 중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일부 구분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발생하지 않음.(다만,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)

4. 작성자

- 산업위원회 안 병 배 의원

참 고 자 료

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